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56
----------	-------

발의연월일 : 2023. 7. 20.

발의자 : 이주환 · 김용판 · 권명호
전봉민 · 안병길 · 최영희
김성원 · 김학용 · 이현승
구자근 · 정운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등의 개발, 먹는물관련영업, 정수기의 설치 · 관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한 원재료 · 제품 · 용기를 검사하거나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먹는물 수질검사 등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고의 · 과실에 따른 검사성적서 거짓 작성, 부실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먼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고의 ·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도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가 부재함.

또한 시설·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추어 지정된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위탁·재위탁을 금지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위탁·재위탁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장비 고장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이 신설되고 거짓 측정결과 산출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기록부의 현장기록사항이 추가되었으나, 해당 사항은 주요한 준수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의·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와 검사기관의 위탁·재위탁 금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고장 방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시료채취기록부 기록사항 추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3조의2, 제58조 및 제59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제2호 중 “발급한 경우”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

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7호의3 중 “발급한 자”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로 한다.

제59조제16호의2 중 “발급한 자”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⑦ (생 략) ⑧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의2. (생 략)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 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u>발급한 경우</u>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1. · 1의2. (현행과 같음) 2. ----- ----- ----- ----- ----- ----- ----- -----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한 경우
3. ~ 8. (생 략) ⑨ ~ ⑬ (생 략) <u><신 설></u>	3. ~ 8. (현행과 같음) ⑨ ~ ⑬ (현행과 같음) <u>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u>

<신 설>

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
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
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
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
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
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발
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
록을 작성한 경우

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
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17. ~ 19. (생략)

17. ~ 19. (현행과 같음)